

# 관세청, AEO 공인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우리 수출기업 돕는다

- 공인 준비서류 대폭 축소로 중소수출기업의 공인심사 부담 완화
- 세계관세기구(WCO) 이행지침 등 AEO 공인기준에 국제 공인기준 반영
-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기준 완화로 공인유지 부담 경감

□ 관세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\*(AEO) 공인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.

\*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(AEO, Authorized Economic Operator): 수출입 관련 업체 중 관세 당국이 안전관리기준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 통관, 세관 검사 축소, 서류심사 간소화 등 통관행정 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/ 미·중·유럽연합(EU) 등 97개국이 운영 중

○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7년 개정 이후 6년 만에 추진되었다.

□ 이번 개정안은 중소수출기업의 AEO 공인심사 부담을 완화하고 AEO에 대한 변경된 국제기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.

○ 특히, 현장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사항을 확대하고 유사 공인기준 간 증빙자료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수출기업의 심사 제출서류를 크게 축소\*해 AEO 공인 준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다.

\* 중소수출기업 제출서류 평균수 : (현재) 약 496개 → (개정안) 약 352개, 144개 감소(약 30%↓)

○ 또한, 거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부분의 공인기준을 완화하고, 폐쇄회로텔레비전(CCTV) 필수감시지역을 지정해 녹화자료 보관에 관한 부담을 낮췄다.

□ AEO 공인신청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.

**< AEO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사항 >**

- ❖ 공인 준비서류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인심사 부담 완화
  - ① (서류제출 축소) 경영방침 공유, 세부목표실행, 관리책임자 인수인계, 신규직원 윤리경영 방침 안내 등 약 20개 기준에 대해 서류제출 생략 후 현장 심사를 통해 확인
  - ② (증빙서류 자료 예시) 모든 가이드라인 기준의 준비서류 예시 추가로 각 공인기준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인 준비 과정 원활화
  - ③ (증빙자료 제출) 유사 공인기준에 대한 증빙자료의 일괄 제출로 중복 제출서류 제거
- ❖ 국제기준(세계관세기구(WCO) 이행 지침)의 국내 적용
  - ① (노동 및 테러자금) 15세 미만 근로 등 금지된 노동형태, 테러자금 사용 목적의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노력을 윤리경영방침 포함 사항으로 규정
  - ② (정보기술 관리) 사회공학기법\*의 사이버테러 예방 조치 등 정보기술 관련 공인기준 추가

\* 사회공학기법(Social Engineering) : 인간 심리나 신뢰를 악용해 사람들을 속여 정보를 얻는 행위  
(예) 공공기관, 지인 사칭 개인정보 피싱, 사내 인트라넷 해킹으로 악성메일 발송 등
- ❖ 기타 공인기준 개선 등
  - ① (재무건전성 기준 완화) <sup>기존</sup>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2배 이하 ⇒ <sup>추가</sup>부채비율 200% 이하도 허용(대규모 경제위기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예 적용 배제 가능)
  - ② (AEO 공급망 구축) 거래업체 선정 시 AEO 기업에게 혜택 부여를 하는지 여부를 공인 기준으로 확인하여 AEO 업체간 우대 분위기 조성, 자발적 AEO 공급망 구축 유도
  - ③ (CCTV 자료 보관) <sup>기존</sup>CCTV 녹화자료를 일률적으로 최소 30일 이상 보관 ⇒ <sup>변경</sup>수출입 물품 포장·보관, 적출입 지점, 출입구 등 필수감시구역에 대해서만 최소 30일 이상 보관

□ 관세청은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AEO 기업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명회\*를 개최한데 이어 추가적인 의견수렴\*\*절차를 거쳐 10월 중 확정할 예정이며,

\* 설명회 : 서울(9.22.), 부산(10.6.), 대전(10.10.) / AEO 기업 관계자, 컨설팅업체 등 약 500여명 참석

\*\* 이메일 접수 : jhjeon@aeo.or.kr / ~10.25

○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관련 고시·훈령 등에 대한 개정 작업 후 '24년도 신청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.

- 관세청 심사정책과 양승혁과장은 “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AEO를 준비하고 유지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, 앞으로도 AEO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심사국 심사정책과	책임자	과 장	양승혁 (042-481-7860)
		담당자	사무관	남우현 (042-481-7865)

